
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안 광 석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에 따라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.
- 최근,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 서도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의 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.
- 이에, 본 의원은 조례에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, 시설기준, 분원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육성·발전

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
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을
제정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
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